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6.4일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환전·송금업무 위·수탁 관련(안 §20조의4 내지 §20조의6)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 (§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 (§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 (§20조의6) 등을 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인 사항 하위규정 위임

(안 §21조의4② 내지 ③)

-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안 §21조의7④, §21조의11, §37조③13)

-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안 §35조②)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9. ~ 2021. 8. 9.)

대통령령 제 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내지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수탁사무의 범위) 법 제10조2제1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신청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는 부대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제20조의5(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70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탁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6(위탁방법 및 절차)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2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무의 위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탁기관과 계속 반복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외환건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외국환거래 촉진과 관련한 금액.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공제액은 0으로 하며,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이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60보다 크면 공제액은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분할납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담금납부의무자의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11 중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를 “분할납부의 신청,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취소의 통지”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검사)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2.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37조제3항13호나목 중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
보”를 “분할납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0조의4(수탁사무의 범위) 법 제10조2제1항에 따른“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 령 신청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 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 확인 또는 실명확인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 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르는 부대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신 설>	제20조의5(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 격)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 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 를 말한다. 1. 「상법」 제170조에 따라 국

<신 설>

내에 설립된 회사 및 외국기업
의 국내지사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
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
탁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6(위탁방법 및 절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2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15영업
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무의 위
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
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탁기관과
계속 반복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같음하여 분기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
결한 위·수탁계약을 변경하거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
의2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
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
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
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2019년 사
업연도 및 2020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
한 금액

나 종료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 나. (생략)

제21조의7(분할납부) ① ~ ③
(생략)

<신설>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외국환거래 촉진과 관련한 금액.

가. ~ 나. (삭제)

제21조의7(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담금납부의무자의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

----- 분할납부의 신청,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징수에 따른 납부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35조(검사) ① (생략)

<신설>

② ~ ⑩ (생략)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략)

③ 1 ~ 12. (생략)

13. 가. (생략)

나.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부 취소-----

-----.

제35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2.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③ ~ ⑩ (현행 ②~⑩과 같음)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1 ~ 12. (현행과 같음)

13. 가. (생략)

나. -----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 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 할납부 여부의 통보	----- 분 할납부와 관련한 사항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752